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현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시민이 쉽게 제명만으로도 그 조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여 시민의 알 권리 및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조례제명에 따른 목적 규정을 개정(안 제1조)

다. 현실에 맞도록 지역연대의 설치와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

1) 지역연대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6조)

2) 지역연대의 구성 중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위원장의 직무 중 내용을 수정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조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를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아동·여성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를 “아동·여성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의 “사고가 있을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 조례</u>	제명 <u>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제3조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 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u>	제1조(목적) ----- ----- ----- ----- ----- ----- 제3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 아 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에</u> ----- ----- ----- ----- -----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 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 을 위해 <u>인천광역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u> (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 ----- ----- ----- ----- ----- <u>인천광역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u> ----- -----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 연직 위원은 인천시 <u>아동·여성 폭력·청소년·119·보건업무 담당 과장</u>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보 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신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경우</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 <u>아동·여성 보호</u> <u>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u>--- ④ ----- ----- . <u>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u> <u>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⑤ <u>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u> <u>남은 임기로 한다.</u>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조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문에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